

育林作業要領

- 심으면 푸른산,
가꾸면 경제림 -

조 정 웅 / 산림청 조림과

1. 育林의 必要性

山林은 木材供給의 經濟的機能 以外에도 國土의 保全, 保健休養, 水資源의 涵養, 土砂의 流失防止, 風水害豫防, 自然및 生活環境의 保全等 多角的인 公益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

産業活動이 活潑해지면서 農業및 建築用材 等 傳統的 資材로 쓰이던 木材가 製紙, 펄프, 包裝材等 工業原料로 經濟的 價値가 높게 評價되고 있으며 産業化와 物質的 豊饒에 따라 大氣淨化, 레크레이션, 情緒純化 等 公益的 價値에 더 많은 山林의 役割을 要求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山林은 治山綠化事業의 成功的 推進으로 全國土를 푸르게는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山林이 經濟林으로 轉換이 要求되고 있고 育林管理를 要하는 어린 나무가 大部分이므로 繼續的인 育林管理가 없이는 造林 目的 達成이 어려운 것이므로 經濟性이 높은 樹種의 造林과 더불어 科學的인 方法으로 이를 가꾸어 가는 育林에 더욱 精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育林作業 要領

우리가 精誠드려 심은 나무가 더욱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實施할 育林作業은 造林地 檢木, 肥料주기, 덩굴除去, 稚樹가꾸기, 가지치기, 造林木의 越冬保護等이 있다.

가. 造林地 檢木

造林成果의 確認과 造林地의 事後管理에 必要한 對策을 樹立코자 今年 또는 前年度 造林地에 대하여 8~9月中旬에 實施하는 것으로서 調査方法은 造林木 全部를 調査하는 全數調査와 一定한 區域을 定하여 調査하는 標準地 調査가 있으며 面積이 적을 때는 全數調査에 依據 造林木全部에 대하여 活着및 生育狀況을 調査하는 것으로서 이듬해 補植計劃樹立및 生育狀況에 따른 施肥等 事後管理 計劃 樹立에 必要하다.

나. 肥料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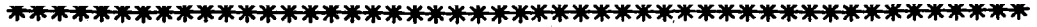
植栽後 1~2年된 造林地에 대하여 造林木의 生育促進과 收穫期의 短縮을 爲하여 山林用 固形 複合肥料를 解水 直後 가급적 일찍 3~5월에 주는것을 原則으로 하되 長期樹를 基準으로 헥타當 90kg(本當 2個)를 제일 긴 가지끝의 5cm 깊이에 준후 흙으로 덮는다.

다. 덩굴除去

썩덩굴등이 茂盛하여 造林木에 被害를 주는 林地에 대하여 덩굴 원 줄기의 根柱를 찾기 容易한 4~6월에 근사미等 藥劑를 使用하여 썩덩굴을 除去함으로써 造林木의 生長 發育促進을 기한다.

라. 稚樹가꾸기

間伐期에 이르지 않은 造林後 5~10年 되는 林地를 對象으로 造林木 또는 保育目的 樹種의 生長에 支障을 주는 雜灌木과 덩굴, 造林木 中 被害木과 生長이 不良한 淘汰 對象木을 6월부터 11月 사이에 除去하



여 造林이 確實히 成功되도록 한다.

마. 가지치기

稚樹 가꾸기가 끝난뒤에 옹이가 없는 優良林 生産과 樹高生長을 促進하기 위하여 상처가 癒합이 잘 되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等 針葉樹와 闊葉樹 中에서 참나무(但, 신갈나무는 除外)는 굵은가지 以下의 가지를 상처가 腐敗될 危險이있는 자작나무, 가문비나무는 죽은가지와 쇠약한 가지를, 상처가 썩기 쉽고 癒합이 잘 안되는 단풍나무, 느릅나무, 벚나무, 물푸레나무는 죽은가지만 生長休止期인 늦가을부터 初봄 사이에 잘라준다.

作業方法은 林木이 올폐해서 光線의 不足으로 아래 가지가 枯死할때 針葉樹는 枝隆部가 뚜렷하게 돌출되지 아니하므로 樹幹에 平行이 되도록 切斷하고, 闊葉樹는 枝隆部가 發達하여 突出이 뚜렷하므로 이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엇비슷하게 잘라 주되,

특히 闊葉樹는 가지치기를 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므로 直徑 5 cm 以上되는 가지는 原則적으로 切斷하지 않도록 한다.

바. 造林木 越冬保護

겨울 동안 造林木의 凍害被害와 豫防을 爲하여 밤나무, 오동나무等 凍害가 豫想되는 樹種에 대하여 造林木 줄기를 11월에 짚으로 싸주고 하단부는 30~40cm 높이로 흙을 북돋아 준다.

2. 맺는말

林業經營은 林地의 生産能力을 가장 크게 發揮할 수 있도록 하는 生産性原則과 收穫이 每年 같은 保續生産原則이지만 事後管理가 뒤 따르지 않으면 造林目的을 達成할 수는 없다. 따라서 造林後 育林을 徹底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木材生産을 期待할 수 없으므로 繼續的인 育林管理가 더욱 더 要求되는 바이다. ★



산에서 炊事行爲 못하도록 山林法 改正

山林廳은 山쓰레기 및 산불發生原因을 根源적으로 除去하여 汚染, 毀損된 山林의 機能回復과 登山秩序를 確立하고자 이에 對한 制度的 補完을 爲하여 山林法 改正을 통해 強力하게 推進토록 하였다.

改正 推進하는 山林法의 主要 骨子は

첫째, 現行 산불防止만을 爲한 入山統制 區域 指定을 自然環境 保存을 爲해서도 指定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山林안에서의 炊事行爲를 禁止하며 例外的으로 農林水産部令이 定한 境遇에 限해 事前 申告를 받아 許容하는 한편,

셋째, 山林에 正當한 事由없이 汚物 및 廢棄物을 버리는 것을 禁止하고

넷째, 入山하는 者는 炊事道具等 火氣物 携帶를 一切禁止토록 하였다.